

선 람	기 관 의 장

제1072호 2019. 5. 31.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노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60호 영농여건불리농지 추가지정 고시 ----- 2
- 삼척시 고시 제63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4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481호 삼척시 장호비치캠핑장 관리·운영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6
- 삼척시 공고 제486호 마음천 하천기본계획[변경]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14
- 삼척시 공고 제487호 오십천(도계~신기) 하천기본계획(변경)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람 공고 ----- 26
- 삼척시 공고 제492호 2020 삼척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재열람 공고 — 47
- 삼척시 공고 제496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48
- 삼척시 공고 제501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49
- 삼척시 근덕면 공고 제18호 도로의 지정 공고 ----- 51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 2019 - 60호

영농여건불리농지 추가지정 고시

「농지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영농여건불리농지를 다음과 같이 지정(추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삼척시장

1. 영농여건불리농지 추가지정 내역

읍면	필지수	면적(m ²)	비고
삼척시 도계읍	1필지	631	

-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한 농지의 필지별 소재지, 지번, 지목 및 면적은 별지 토지조서와 같음.
-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한 토지조서와 지적도(축척 5천분의 1이상)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지적도에 따름
-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 지적도 열람 등
 - 가. 지적도는 삼척시 농정과에 비치하며 일반인이 열람 할 수 있음.
 - 나. 영농여건불리농지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도 볼 수 있음.
-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함.

영농여건불리농지 지목별 토지조서

1. 목적 : 영농여건불리농지 추가 지정 고시

2. 토지편입현황

가. 총괄

(단위 : ㎡)

구분	계	답	전	과수원	비고
도계읍	631	0	631	0	

나. 용도지역별 면적

(단위 : ㎡)

구분	계	도시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비고
도계읍	631	0	631	0	

다. 토지조서

(단위 :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지역			비고
	읍면	리				도시 지역	관리지 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1	도계읍	고사리	157-1	전	631		631		

삼척시 고시 제2019 - 63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축물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5. 31.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미근로 1729-45 외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5. 3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1007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미근로 1729-45	20190531		20090626	행정구역(미로,노곡,근덕)연결구간 시종점지역명칭활용(미로,근덕)
2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635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3681-5	20190531		20090626	구7번국도연결구간으로기존도로명활용
3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동산리 46-3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동산길 374	20190531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삼척시 공고 제2019- 481호

「삼척시 장호비치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24일

삼척시장

1. 제안이유

- 맹방관광지 내 맹방 국민여가캠핑장(가칭: 맹방비치캠핑장) 개장에 따라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사용료의 징수 등의 규정 필요

2. 주요내용

- 가. 제명의 개정
(당초) “삼척시 장호비치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를
(변경) “삼척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로 변경
- 나. 본문의 개정
(당초) “장호비치캠핑장”을 (변경) “캠핑장”으로 변경
- 다. 맹방캠핑장 사용료 신설 : [별표 1]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참조 관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삼척시청 관광정책과

주소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우편번호 : 25914

전화 : 033-570-3547, FAX : 033-570-3141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붙임 1. 삼척시 장호비치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1부. 끝.

삼척시 조례 제 호

삼척시 장호비치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척시 장호비치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삼척시 장호비치캠핑장 관리·운영 조례”를 “삼척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삼척시 장호비치캠핑장”를 “삼척시가 조성한 캠핑장”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대상) 삼척시 근덕면 하맹방리 맹방비치캠핑장과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장호비치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적용한다.

제5조 본문 중 “장호비치캠핑장”을 “캠핑장”으로, “한다.”를 “하며,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을 정기휴무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성수기는 제외하며, 위탁 등의 경우 수탁자의 사정에 따라 휴무일이 변경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제5조제1항”를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시설담당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관리자 및 종사자”로 한다.

별표1 및 별지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1]

삼척시 캠핑장 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1. 맹방비치캠핑장

(단위 : 원/1박)

시설별	사용기준	성수기	비수기		동절기	
			주말	평일	주말	평일
일반야영장	1개소/1박	35,000	25,000	20,000	20,000	15,000
오토캠핑장	1개소/1박	40,000	30,000	25,000	25,000	20,000
방갈로·글램핑형	1대/1박	120,000	100,000	80,000	80,000	60,000

2. 장호비치캠핑장

(단위 : 원/1박)

시설별	사용기준	성수기	비수기		동절기		
			주말	평일	주말	평일	
일반야영장	1개소/1박	35,000	25,000	20,000	20,000	15,000	
오토캠핑장	1개소/1박	40,000	30,000	25,000	25,000	20,000	
카라반 캠핑장	2인용	1대/1박	120,000	100,000	80,000	80,000	60,000
	4인용	1대/1박	160,000	120,000	100,000	100,000	80,000
	6인용	1대/1박	180,000	140,000	120,000	120,000	100,000
스파컨테이너 하우스	1대/1박 (6인)	240,000	220,000	200,000	200,000	180,000	

※ 1일 사용시간 : 당일 14:00 ~ 다음날 11:00 기준이며, 퇴실시간 초과 시 추가요금 징수 (1시간 초과 시 시설사용료의 10%, 4시간 초과 시 1일 사용료 추가)

※ “성수기“란 7월, 8월을 말한다.

“동절기“란 11월에서 2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비수기“란 성수기와 동절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 (성수기 제외)

※ 폐광지역(태백시, 정선군, 영월군) 주민은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 (성수기 제외) 단, 위탁 운영의 경우는 적용을 달리 할 수 있다.

※ 장기체류자는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 (성수기 제외)

※ 삼척시 교류도시 주민은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20 (성수기 제외) 단, 위탁 운영의 경우는 적용을 달리 할 수 있다.

※ 감면 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시

※ 스파컨테이너 하우스 인원은 최대 8인으로 한정하며, 추가 시 1인당 1만원으로 한다.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례·규칙 제명 : 삼척시 장호비치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 의견제출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 삼척시 공고 제2019-486호

마음천 하천기본계획(변경)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마음천 하천기본계획(변경)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5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5월 29일

삼척시장

1. 계획의 개요

- 계획명 : 마음천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 위치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부남리, 덕산리 일원
- 계획연장 : 3.23km
- 계획시행자 : 삼척시

2. 공람기간, 장소 및 의견제출

- 공람기간 : 2019. 05. 29 ~ 2019. 06. 27
- 공람장소 : 삼척시청 건설과(033-570-3496), 근덕면사무소(033-570-4826)
- 의견제출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에 작성하여 서면 제출
- 제출기간 : 2019. 07. 04.(공람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
- 제출내용 : 당해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와 감소방안, 공청회개최 필요성 여부에 관한 의견 등

3. 주민설명회 개최

- 개최일시 : 2019. 06. 03. (월) 11:00
- 개최장소 : 근덕면사무소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삼척시청 건설과(033-570-34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본 공람(안)은 최종 결정 고시된 내용이 아니므로 앞으로 행정절차 및 관계부서 협의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항은 삼척시청 홈페이지(<http://www.samcheok.go.kr>)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에서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내용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붙임 1.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본
2. 주민의견 제출 서식

마 읍 천 하 천 기 본 계 획 (변 경)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서
 (초 안 요 약 서)

2019. 05.



제1장 요약문

제1장 요약문

1.1 계획의 내용

1.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삼척시 관내 지방하천인 마읍천은 2001년 하천기본계획 최초 수립 후 2015년 하천기본계획을 실시하였음
- 금회 계획구간인 마읍천은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종합적인 하천의 관리, 이용, 보존, 개발, 치수경제 및 수질보전에 관련된 사항을 일관성 있게 조사·분석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수자원 종합개발 지침으로 활용코자 함
- 또한, 하천자산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하천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수계 하천현황 수리 현황의 보존 및 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정리하여 대장화하고 전산화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일관된 하천관리를 도모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증진을 위한 기본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1.1.2 주요계획 개요

- 기 수립(2001년, 2015년)되었던 하천기본계획(변경)에서의 홍수량 및 홍수위 검토
- 기 수립(2001년, 2015년)되었던 하천기본계획(변경)에서의 하천 치수시설물 검토
- 기 수립(2001년)되었던 하천기본계획에서의 계획홍수위를 고려한 호안계획

<표 1-1>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

하천명	측점(No.)	계획홍수량(m ³ /s)	계획홍수위(EL.m)	비고
마읍천	0+0	1,260	1.70	과업종점
	0+200	1,260	1.84	
	0+353	1,260	2.38	덕봉대교
	0+400	1,260	2.42	
	0+600	1,260	2.73	
	0+800	1,260	2.92	
	1+000	1,120	3.24	
	1+128	1,120	3.63	덕산교

제1장 요약문

제1장 요약문

<표 계속>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

하천명	측점(No.)	계획홍수량(m ³ /s)	계획홍수위(EL.m)	비고
마음천	1+200	1.120	3.66	
	1+400	1.120	3.92	
	1+600	1.120	4.07	
	1+800	1.120	4.25	
	2+000	1.120	4.59	
	2+200	1.120	4.80	
	2+400	1.120	5.08	재동유원지
	2+600	1.120	5.70	
	2+800	1.120	5.94	
	3+000	1.120	6.30	
	3+007	1.120	8.22	재동보
	3+200	1.120	8.35	
	3+230	1.120	8.37	과업시점

<표 1-2> 하천시설물 계획 총괄

하천	호안계획	배수시설물	교량
마음천 (지방)	5개지구 L= 3,788m	2개 (제설치)	8개소

1.2 지역개황

- 삼척시 환경관련 지구·지역 지정현황 조사결과 상수원보호구역 5개소, 야생생물 보호구역 2개소, 생태계 변화관찰지역 3개소,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4개소, 생태·경관보전지역 1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계획구간의 생태자연도 등급은 대부분 2등급 및 일부 3등급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관련현황은 다음 <표 1-3>과 같음

제1장 요약문

<표 1-3> 환경관련현황 총괄표

구 분	해 당 여 부		계획구간과 관련여부	
	삼척시	계획구간		
환경관련 지역·지구 지정현황	상수원보호구역	5개소 ×	◦ 해당사항 없음	
	야생생물 보호구역	2개소 ×	◦ 해당사항 없음	
	생태계 변화관찰 지역	3개소 ×	◦ 해당사항 없음	
	수산자원보호구역	× ×	◦ 해당사항 없음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14개소 ×	◦ 해당사항 없음	
	백두대간 보호지역	○ ×	◦ 해당사항 없음	
	습지보호구역	× ×	◦ 해당사항 없음	
	생태·경관보전지역	1개소 ×	◦ 해당사항 없음	
	자연공원	× ×	◦ 해당사항 없음	
	수변구역	× ×	◦ 해당사항 없음	
	생태자연도	○ ○	◦ 대부분 2등급, 일부 3등급	
	환경규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 ×	◦ 해당사항 없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 ×	◦ 해당사항 없음
수질오염총량 관리지역		○ ×	◦ 미시행 지역(그림4-3) 참조	
중권역별 물환경 목표기준		○ ○	◦ 목표기준 '1a 매우 좋음'	
저항유 공급·사용 지역 지정		○ ○	◦ 경유·황함유량 0.1% 이하 ◦ 중유·황함유량 0.3%이하(LSWR포함)	
배출허용기준(폐수)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 ○	◦ 근덕면 "나"지역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 ×	◦ 해당사항 없음	
주요 보호대상 시설물 현황	문화재	46점 ×	◦ 해당사항 없음	
	보호수	○ ×	◦ 강원-삼척-6 (남동측 약 0.1km)	
	천연기념물	5개소 ×	◦ 해당사항 없음	
	취·정수장	○ ×	◦ 동막취수장 (상류수계 약 6.7km)	

제1장 요약문

제1장 요약문

1.3 검토항목·범위 설정

- 본 계획은 삼척시에 위치한 마읍천 일원을 대상지역으로 하며, 계획구간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영향권을 설정한 후, 주요 평가항목에 따른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였음

<표 1-4> 대상지역의 설정

구분	평가항목	평가대상지역	대상지역 선정사유	
1.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 계획구간	
	나)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 계획구간	
2.입지의 타당성	가)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 다양성 서식지 보전	◦ 계획구간 중심으로부터 양안 200m 이내 ◦ 보호지역, 법정보호종 출현여부 파악 및 보호종 등의 출현시 보호대책 수립 필요 ◦ 계획수립시 수생·수변식물의 식생변화 ◦ 육상·육수 동물에 미치는 영향 ◦ 하천 생태계 변화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 ◦ 계획수립에 따른 지형의 변화 및 생태축 단절에 대한 검토 필요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 ◦ 경관관련보전지역 분포여부 및 자연경관심의 대상여부 검토 필요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수환경의 보전 (수리·수문)	◦ 계획구간	◦ 계획시행 시 토사유출 및 투입 인부에 따른 오수 발생에 의한 영향 ◦ 축제, 보축 등 개수계획 필요성 여부 ◦ 교량, 보 등 하천횡단시설 개량 필요 여부 ◦ 홍수위, 홍수량에 따른 수리·수문 변화
		환경 기준 부합성	◦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	◦ 계획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영향 및 환경기준 부합성 여부 ◦ 계획시행으로 인한 소음·진동 영향 및 환경기준 부합성 여부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	◦ 계획시행 시 투입인부에 따른 폐기물 발생 및 편입토지에 따른 지장물 발생 여부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계획구간	◦ 하천구역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 계획 수립	

제1장 요약문

1.4 대안의 설정 및 대안별 환경영향

- 대안의 종류 중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계획비교, 수단·방법을 대안으로 설정하여 중점 검토하고자 함

가. 계획비교

-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Action)을 대안으로 선정하여 비교·검토함

<표 1-5> 계획비교 대안검토

구분	행정계획 미수립 시(No action)	행정계획 수립 시(Action)
상위관련계획과의 연계	◦ 이전 상위계획과 부합된 계획 수립으로 현황과 맞지 않음	◦ 계획 재수립으로 신규 상위계획과의 부합 가능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 현재의 상태를 유지 ◦ 계획시행에 따라 호안정비 계획수립으로 일부 지형의 변화가 예상되나 기존 유로를 유지하며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지형변화 없음(기존지형의 유지) ◦ 경관상의 변화는 근경위주로 나타나며, 호안은 생태적으로 정비하여 하천경관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하천의 기존 경관 유지 ◦ 현황을 반영한 계획수립으로 치수·이수적으로 안정된 하천계획 수립이 예상된다
생활환경의 부합성·안정성	수환경의 보전 (수리·수문)	◦ 이전 하천기본계획을 유지함으로써 상황에 맞는 계획의 반영이 불가능
	환경 대기질 기준	◦ 현재의 대기질을 유지 ◦ 공사시 일시적인 대기오염의 영향이 예상된다
	소음·진동	◦ 현재의 상태를 유지 ◦ 공사시 일시적인 소음발생이 예상된다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현재의 상태를 유지 ◦ 계획수립에 따른 폐기물 발생이 예상된다 ◦ 폐기물관리계획 수립으로 저감효과가 예상된다
	토지이용계획상의 변화 없음	◦ 계획적인 토지이용계획의 수립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나. 수단·방법

- 수단·방법에 대한 대안 검토는 본 계획구간의 호안 조성시 완경사호안과 급경사호안별 안정성, 경제성, 친화력, 적용지대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비교·검토하였음
- 경제성 측면과 주변 환경과 친화력을 고려하고 하천 유수에 대한 저항성, 시공 및 유지 관리 용이성 등이 유리한 전석쌓기, 식생호안블럭 공법 등이 적용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제1장 요약문

제1장 요약문

1.4.2 환경영향 및 저감대책 강구

항목	환경영향예측	저감방안
자연환경의 보전	<p>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식물상 및 식생 호안공사 등으로 인하여 수변 및 제방변 식물상의 훼손이 예상 호안식생이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귀화식물 및 교란지 식물종의 유입이 예상 보축 및 축제공사시 일시적인 교란지 식물종의 증가가 예상 육상 동물상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등의 발생으로 서식지 회피나 이동이 예상 육수 동물상 하도시설물 설치시 토사가 하천내로 유입될 경우 수중 내 탁도 증가로 하천 내 서식하는 어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등의 영향 예상 법정보호종 수달 : 공사지역을 회피하여 먹이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 삼 : 사업시행으로 인한 서식지 훼손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주기적인 살수차량 운행, 차량 속도 제한 등으로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 생태계 교란종에 대해서는 철저한 초기 관리를 통해 공사 후 하천식물상의 교란을 최소화 육상동물상의 번식기를 피하고 저소음·저진동 공법을 반영하여 영향을 최소화 주간공사 실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우회 수로를 선 설치, 오탁방지막 설치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 어도 설치계획 수립(8개소의 보, 낙차공 중 7개소에 어도설치)
	<p>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계획은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개수계획 및 환경친화적인 하천계획 등을 반영하여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계획으로 호안계획, 교량 및 배수시설물의 재 설치로 인한 지형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교량 재설치 시 교각 주변의 하상에 세굴되는 등의 지형변화가 예상됨 고호1~4지구 및 저호1지구로 총 5개 지구계획 (총 연장 = 3,788m)에 따른 지형변화 예상 계획구간 주변으로 I~II 등급의 모래해안, 육계도, 시스택이 조사된 바, 계획 시행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 할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실시 계획 시 이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토록 하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희 마을천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시 교량 재설치 및 호안계획 등으로 기존 지형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유로 활용 및 하천 내 원지반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며 계획구간의 자연적 특성을 고려하여 단면 및 하상선형을 최대한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지형변화가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였음 인위적인 시멘트 및 콘크리트계 재료를 지양하고 자연재료인 돌, 나무, 식생 등을 조합하여 사용한 환경호안공법적용
	<p>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환경부예규 제561호, 2015.08.31. 환경부)의 조망점 선정기준을 참고하여 계획구간 내 교량 재가설 및 호안공법 등이 적용되는 지점을 대상으로 선정함 계획 시행 시 신설교량 및 하천의 선형 변경 등의 계획이 없으며, 대부분 기존교량의 재가설 및 호안계획으로 경관적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계획의 저감방안으로 고호지구 및 저호 지구에 대하여 유수에 의한 파괴와 침식으로 부터의 안정성, 친환경성, 경관성 등을 고려한 호안설치를 계획함

제1장 요약문

항목	환경영향예측	저감방안
자연환경의 보전	<p>수환경의 보전(수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고호 및 저호지구 공사시 우수 및 토사의 유출이 예상 부유물질 혼합농도는 21.8~75.9mg/L으로 예측 투입인부에 따른 오수발생 장비가동으로 인한 유류유출 하천횡단 교량 공사시 부유토사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토목공사는 가급적 우기(6월~9월)를 피하여 실시 공사구간, 부지 경계부로 가배수로 선(先) 설치 및 임시침사지 설치 하천 유입지점에 오탁방지막 설치 검토 현장장투입인력에 의해 발생하는 분노는 간이 화장실을 설치, 위탁처리 운영시 점·비점오염원에 따른 영향
	<p>수환경의 보전(수리·수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홍수량 1,120~1,260m³/s 계획하폭 99~232m 시설물 능력검토 제방 여유고 : 계획홍수량이 1,120m³/sec ~ 1,260m³/sec 이므로 여유고는 1.0m를 적용하였음 둑마루폭 5m적용, 비탈경사 1:2이상 적용 계획 시 밀다짐 폭을 최소 6.0m 이상 횡단시설물 : 존치 덕산교는 여유고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도계획 마음천 전구간에 대하여 100년 빈도의 홍수량을 목표유량(계획홍수량)으로 채택하고 그 유량을 유역과 하도에서 처리함 제방 및 호안 계획 : 5개지구, L= 3,788m 호안은 자연성 및 환경블럭으로 계획 배수시설 : 2개소 지역 주민의 요구사항 및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계획배수문을 설치하였고, 최소 규격은 유지관리 및 생태통로 확보를 위하여 Ø1000mm계획 교량 : 덕산교는 여유고 부족으로 검토되어 재설치 계획을 수립
	<p>대기질 환경기준 부합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희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개수 계획 및 환경친화적인 하천계획 등을 반영하여 교량 재설치, 호안 및 배수시설물 설치계획을 수립하였음 호안계획 : 총 5개 지구(고호1~4지구, 저호1지구) 배수시설물 계획 : 총 2개소(재설치) 교량 계획 : 총 1개소(재가설) 예측결과, 최대농도는 56m 이격한 거리에서 최대 66.3µg/m³로 환경기준(24시간 평균 100 µg/m³)을 만족하는 것으로 예측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주기적인 교육 실시 및 관리감독 철저 주기적인 살수 실시 세운 및 측면 살수시설 설치 방진망 설치검토 NOx(질소산화물) 저감방안 저탄소 자재 사용

제1장 요약문

항목	환경영향 예측	저감방안
생활 환경의 안정성	소음·진동 환경기준 부합성 ◦ 공사장비 : 굴삭기 1대, 덤프트럭 1대, 불도저 1대 ◦ 소음 : 합성소음도는 78.6dB(A)로 예측, 공사시 일반지역 72.2m 이내, 사육시설 128.3m 이내 지역에서 소음영향이 예상됨 ◦ 진동 : 합성진동도는 55.5dB(V), 공사시 일반지역 4m 이내, 사육시설 6m 이내 지역에서 환경규제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	◦ 장비에 의한 일반적 저감대책 -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관리방안 - 작업시간제한 - 건설장비의 적정배치 및 공정관리 - 공정별 장비의 분산투입 ◦ 가설방음판넬 설치 ◦ 주변 거주민과의 협조체제 강화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공사시 - 투입인력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장비가동으로 인한 폐유발생과 교량 및 호안등의 철거 및 재설치 등으로 인한 건설폐기물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	◦ 공사시 - 분리수거함 설치를 통한 분리수거 및 재활용 효율적 관리 - 현장 내 이동식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여 분뇨의 위탁처리 혹은 인근 공용화장실 및 식당 이용 - 폐유는 보관시설 설치 후, 지정폐기물 업체에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재활용으로 우선 처리하며, 어려울 시 소각, 매립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하천시설물 계획 - 호안계획은 독마루 폭, 여류고, 비탈경사, 단위소류력 등의 설계 기준을 고려하여 결정 - 배수시설물은 수단면은 충분하나 개수계획 제방내에 위치하여,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재설치 - 고수부지는 환경적, 생태적 잠재력을 살린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친수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	◦ 체계적인 조사, 종합분석, 하천 정비·관리계획 수립을 통하여 상·하류의 일관성 있는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 하천공간관리 계획 ◦ 하천구역내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

1.5 결론

- 본 계획은 삼척시 마음천을 대상으로 하는 하천기본계획(변경)으로 수계 하천구간에 대한 하천의 관리, 이용, 보전, 개발, 치수경제 및 하천환경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체계있게 조사 분석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계획시행시 자연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안정성,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등 제반 사항에 걸쳐 정성적인 평가를 실시한 결과, 공사시 토사유출, 건설장비 소음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일부 미미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었음
-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시 치수상의 기능은 보장하면서 현재의 하상 및 유로를 유지하고, 시설물 계획을 최소화하는 등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방향에 부합되는 계획을 수립함

제1장 요약문

과 동시에 추후 계획시행시 항목별 적정 저감대책을 수립함으로써 하천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임

제1장 요약문

**오십천(도계~신기) 하천기본계획(변경)수립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2019. 05



가. 주민의견 수렴

- 오십천(도계~신기) 하천기본계획(변경)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민의견과 원주지방환경청, 강원도, 삼척시 의견을 수렴하였음.

1) 사업의 개요

- 사 업 명 : 오십천(도계~신기) 하천기본계획(변경)수립
- 위 치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및 신기면 일원
- 연 장 : 18km
- 사 업 시 행 자 : 삼척시

<표 1> 계획하천 위치 및 현황

하천명	하천등급	구간	하천종결	과입연장(km)
오십천	지방하천	도계읍	삼척시 도계읍 심포리 ~ 도계읍 발이리 일원	11.40
		신기면	삼척시 신기면 마차리 ~ 신기면 마차리 일원	6.60
		총 계	-	18.00

<표 2> 계획하천 수계 현황

본류	유수의계통(수계)		하천등급	하천의 구간(시점/종점)					유역면적(k㎡)	유로연장(km)	하천연장(km)	하천지정 근거 및 일자	
	제1지류	제2지류		시점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계					
오십천	-	-	지방하천	시점	강원	삼척	도계	심포리	나한정	350.16	46.06	38.70	강원 제2-146호
				종점	강원	삼척	마평	오십천(지방)합류점					
			지방하천	시점	강원	삼척	마평	미로면	면계	394.72	56.80	9.30	대동강영 제6535호
				종점	강원	삼척	청나	청나동	해안				

<표 3> 하천기본계획 수립현황

하천	등급	위 치		수립연장(km)	수립년도	수립기관
		기 점	종 점			
오십천	지방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심포리 나한정 합류점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마차리	18.0	1999.09	삼척시
		강원도 삼척시 성내동 180-7번지선	강원도 삼척시 경라동 경라동 해안선(동해)	3.8	2012.12	삼척시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태평리	강원도 삼척시 성남동 (엑스포교 상류)	26.20	수립중	삼척시

■ 하천시설물 계획

<표 4> 하천시설물 계획

하천명	축제		보축		고호	
	개소	연장(m)	개소	연장(m)	개소	연장(m)
오십천	3	1,012	18	5,128	4	705

<표 5> 축제 계획

하천명	지구명	안별	연장(m)	축점(No.)
오십천	축제1	좌안	175	39+100~39+292
	축제2	좌안	733	39+720~40+470
	축제3	우안	104	40+948~41+73
합계		-	1,012	-

<표 6> 보축 계획

하천명	지구명	안별	연장(m)	축점(No.)	비고
오십천	보축1	우	252	32+222~32+536	파라넷
	보축2	우	135	32+893~33+992	보축
	보축3	우	135	33+479~33+598	파라넷
	보축4	우	346	34+069~34+472	보축
	보축5	좌	88	34+335~34+407	파라넷
	보축6	좌	532	34+958~35+531	보축
	보축7	우	483	35+085~35+531	보축
	보축8	우	350	35+866~36+236	파라넷
	보축9	우	478	36+440~36+961	파라넷
	보축10	좌	112	37+517~37+630	보축
	보축11	우	222	37+837~38+057	파라넷
	보축12	좌	193	37+761~37+953	파라넷
	보축13	우	994	38+239~39+234	파라넷
	보축14	좌	294	38+242~38+540	파라넷
	보축15	우	62	42+553~42+604	파라넷
	보축16	우	121	43+390~43+505	파라넷
	보축17	좌	115	43+700~43+825	파라넷
	보축18	우	78	45+129~45+242	파라넷
합계		-	4,990		

<표 7> 고수호안 계획

하천명	지구명	안별	연장(m)	축점(No.)
오십천	고호1지구	좌	116	42+845 ~ 42+952
	고호2지구	우	105	42+952 ~ 43+086
	고호3지구	우	144	43+255 ~ 43+416
	고호4지구	우	341	43+520 ~ 43+839
합계		-	706	-

■ 교량계획

<표 8> 교량 계획

하천명	교량명	축점(No.)	교량연장(m)	현재경간장(m)	계획고			검토결과(부속여부)	교량 계획
					계획홍수위(EL.m)	기준여유고(m)	교좌장제/현차단고(EL.m)		
오십천	연화교	31+478	84.0	13.0	117.54	1.0	118.67	경간장부족	폐가설
	오십천16철교	34+019	84.0	18.5	141.32	1.0	143.15	여유고,경간장부족	폐가설
	신설교량	34+010	52.0	30.0	143.30	1.0	144.30	신설계획	신설
	오십천17철교	34+802	63.0	8.5	147.81	1.0	149.15	여유고,경간장부족(강래폐가설)	폐가설
	발리교	35+141	67.0	1.2	147.81	1.0	147.87	경간장부족	폐가설
	오십천19철교	36+898	63.0	7.5	165.39	1.0	164.51	여유,경간장부족	폐가설
	소담교	37+026	74.0	34.2	166.36	1.0	166.04	여유고부족	폐가설
	농공단지교	37+996	54.0	9.3	177.9	1.0	174.38	여유고,경간장부족	폐가설
	늑구교	38+565	72.0	10.5	183.11	1.0	180.2	여유고,경간장부족	폐가설
	늑구교	39+296	72.0	16.5	188.54	1.0	188.26	여유고,경간장부족	폐가설
	제1무명교	40+116	44.0	13.8	197.66	0.8	199.97	경간장부족	폐가설
	오십천20철교	40+670	31.0	7.4	206.64	0.8	206.46	여유고,경간장부족	폐가설
	제3무명교	41+073	38.0	-	210.12	0.8	209.57	여유고부족	폐가설
	신흥교	41+825	24.0	10.1	222.52	0.8	217.4	여유고,경간장부족	폐가설
	도원1교	42+023	45.0	14.2	220.69	0.8	223.83	경간장부족	폐가설
	도원대교	42+359	55.0	17.4	227.67	0.8	231.36	경간장부족	폐가설
	전두교	42+553	33.0	11.3	230.18	0.8	229.74	여유고,경간장부족	폐가설
	덕현교	42+957	38.0	7.8	233.97	0.8	236.65	경간장부족	폐가설
	전두2교	43+504	38.0	10.4	241.34	0.8	247.73	경간장부족	폐가설
	전두3교	43+900	27.0	13.6	245.51	0.8	250.68	경간장부족	폐가설
	홍천2교	45+563	24.0	10.0	277.06	0.8	280.43	경간장부족	폐가설
	오십천22철교	46+919	23.0	6.3	313.89	0.8	313.26	여유고,경간장부족	폐가설

■ 보 및 낙차공 철거 및 재가설 계획

<표 9> 보 및 낙차공 철거 및 재가설 계획

구 분	측점(No.)	구조물명	철거 및 재가설 사유
보 철거계획	40+656	제5보	경지(답) 면적감소 등으로 농업용수 공급원으로 이용되지 않음 ·보 주변지역 하천정비계획(오십천 20월교 재가설계획) 수립과 함께 제5보를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
보 재가설 계획	32+492	제1보	·보 노후 및 기초 노출되었으며, 물받이 연장부족, 바닥보호공 일부 유실되어 재가설 계획 수립
	33+572	제2보	·보 상태는 양호한편이나, 물받이 연장부족, 어도 미설치로 재가설 계획 수립
	37+306	제4보	·보 노후 및 일부 파손되었으며, 물받이 연장부족, 바닥보호공 미설치되어 재가설 계획 수립

■ 어도설치계획

<표 10> 어도 설치위치 및 계획

구조물명	측점 (No.)	기존 어도 유무	어도 설치계획(유심부)			
			좌안부	중앙부	우안부	우안부
제1보	32+492	○	◎	◎	○	
제2보	33+573	×	○	◎	◎	
제3보	36+037	○	○	◎	◎	
제4보	37+306	○	◎	△	△	
제5보	40+656	×	○	◎	○	

2)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공고

공 략 기 간	공 략 장 소
2019. 03. 22. ~ 2019. 04. 19. (20일간)	삼척시청 건설과(033-570-3496), 도계읍사무소(033-570-4737), 신기면사무소(033-570-4974)

오십천(도계~신기) 하천기본계획(변경)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오십천(도계~신기) 하천기본계획(변경)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환경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물적 제도, 「토지이용규제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3월 22일
삼척시청

1. 계획의 개요
· 목적 및 명: 오십천(도계~신기)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 위 치: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및 신기면 일원
· 계획 면적: 135km²
· 계획시행처: 삼척시

2. 공람기간, 장소 및 의견제출
· 공람기간: 2019. 03. 22. ~ 2019. 04. 19.
· 공람장소: 삼척시청 건설과(삼척시도계읍, 도계읍사무소(033-570-4737), 신기면사무소(033-570-4974))
· 의견제출: 공람장소에 방문한 주민의견 제출서류 작성하여 서명 제출
· 제출내용: 당해 계획사항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현상외피해와 그 소멸단, 중영의 계획 및요청 사항에 관한 의견 등

3. 주민설명회 개최
· 개최일시: 2019. 04. 04.(목) 11:00(신기면), 14:00(도계읍)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삼척시청 건설과(033-570-34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 공무원(민간) 최종 결정 2주 전(4월 19일)으로 참석은 불의할지 및 참석여부 현 상 연락하여서 방법 등 신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신기면사무소, 신기면사무소)
· 본 사업의 신청서 제출처는 <http://www.sancheok.go.kr>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 <http://www.etamp.go.kr>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을 작성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삼척시청 공고 제2019-059호

오십천(도계~신기) 하천기본계획(변경)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오십천(도계~신기) 하천기본계획(변경)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환경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물적 제도, 「토지이용규제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03월 22일
삼척시청

1. 계획의 개요
· 목적 및 명: 오십천(도계~신기)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 위 치: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및 신기면 일원
· 계획 면적: 135km²
· 계획시행처: 삼척시

2. 공람기간, 장소 및 의견제출
· 공람기간: 2019. 03. 22. ~ 2019. 04. 19.
· 공람장소: 삼척시청 건설과(삼척시도계읍, 도계읍사무소(033-570-4737), 신기면사무소(033-570-4974))
· 의견제출: 공람장소에 방문한 주민의견 제출서류 작성하여 서명 제출
· 제출내용: 당해 계획사항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현상외피해와 그 소멸단, 중영의 계획 및요청 사항에 관한 의견 등

3. 주민설명회 개최
· 개최일시: 2019. 04. 04.(목) 11:00(신기면), 14:00(도계읍)

4.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삼척시청 건설과(033-570-349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 공무원(민간) 최종 결정 2주 전(4월 19일)으로 참석은 불의할지 및 참석여부 현 상 연락하여서 방법 등 신청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신기면사무소, 신기면사무소)
· 본 사업의 신청서 제출처는 <http://www.sancheok.go.kr>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 <http://www.etamp.go.kr>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요약을 작성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아일보 (2019.03.22)

강원도민일보 (2019.03.22)

3) 주민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9. 04. 04 (목) 11:00 신기면사무소
2019. 04. 04 (목) 14:00 도계읍사무소
- 참석자 : 마을 주민 및 관계자 약 20여명

■ 설명회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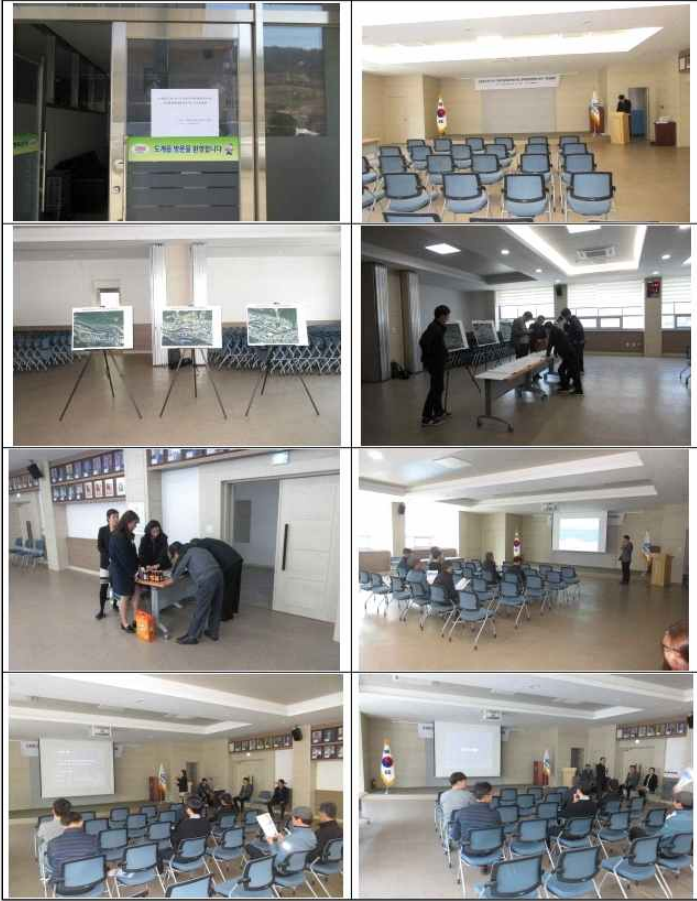
<11:00 신기면사무소>



<그림계속>



<14:00 도계읍사무소>



■ 설명회 참석자 명부

오십천(도계-신기) 하원기본계획(변경) 수립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오십천(도계-신기) 하원기본계획(변경) 수립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구분	성명	주 소	비고
1	신종국	신기면 15	
2	김근호	마리리 182	
3	김현우	신기면 새마을 20	
4	김갑성	신기면 새마을 20	
5	이성민	신기면 새마을 20	
6	김유영	신기면 새마을 20	
7	이정호	신기면 새마을 20	
8	신영호	신기면 새마을 20	
9	홍재현	신기면 새마을 20	
10	오규	신기면 새마을 2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오십천(도계-신기) 하원기본계획(변경) 수립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오십천(도계-신기) 하원기본계획(변경) 수립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구분	성명	주 소	비고
1	이성호	신기면 새마을 20	
2	김중철	신기면 새마을 20	
3	박경식	신기면 새마을 20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오십천(도계-신기) 하원기본계획(변경) 수립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오십천(도계-신기) 하원기본계획(변경) 수립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구분	성명	주 소	비고
1	김병영	신기면 새마을 20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오십천(도계-신기) 하원기본계획(변경) 수립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오십천(도계-신기) 하원기본계획(변경) 수립 주민설명회 참석자 명부	
구분	성명	주 소	비고
1	이성호	신기면 새마을 20	
2	김근호	신기면 새마을 20	
3	김현우	신기면 새마을 20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1. 주민의견

<신기면사무소>

구분	질문	답변
이성재	○금회 하천기본계획수립하면 언제 시행할 것인지?	○6월말 수립해서 관련 국비 확보 되는 대로 시행할 것임.
이상수	○삼척시에서 환선굴 관광객들로 인해 오염되고 있는 무릉천을 먼저 정비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광산개발사업자 및 일자리경제과 등에 문의하면 될 것임.
전금표	○근처 석회석광산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하천정비할 때 석회석광산으로 인한 영향과 관련하여 이번 기회에 같이 정비했으면 좋겠음.	○해당부서에 전달하여 협의해보겠음.

<도계읍사무소>

구분	질문	답변
김정길	○주민설명회가 금회 제외하면 또 진행되는지?	○관련법에 따라 초안공람공고 후 1회(금회) 진행됨.
이철우	○산기천(소하천)쪽에 사토장으로 7~8m 쌓아왔으면 이 지역에 제방이 필요해 오십천계획수립시 해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토사유출이 우려됨.	○현장 방문 및 재검토 해보겠음.
민병덕	○기존 정화조 미철거 지역이 있으니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길 바람.	○관련사항은 본 하천사업과는 관련성이 미약하며, 해당 하수관거공사의 감리단에 문의해야 할 것임.

2. 삼척시 환경보호과 의견

구분	초안 의견	조치 계획
삼척시 환경보호과	○삼척 오십천(도계~신기) 하천기본계획(변경)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검토결과,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에서 서면심의한 결정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발사업 시행시 발생하는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주민의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본안보고서 작성시 반영할 것임.

3. 강원도 의견

구분	초안 의견	조치 계획
1. 총괄	<p>I. 총괄의견</p> <p>○오십천의 효율적인 관리와 하천사용의 이익 증진을 위한 하천기본계획(변경)으로, 향후 사업 시행으로 인한 계획지구 및 주변에 대한 자연생태, 대기질, 수질, 토양, 소음·진동 등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함</p>	○세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본안에 충실히 반영하겠음.
	○사업 시행시 사전에 예측치 못한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추가 악영향이 있거나 또는 있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 신속히 별도의 저감대책을 강구·이행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세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본안에 충실히 반영하겠음.
■ 항목별 검토의견		
1. 개발 기본 계획의 적정성	<p>○국가환경종합계획,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환경보전중기계획, 강원도 환경보전계획, 삼척시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성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함</p> <p>○상위·관련계획 검토 시에는 상위·관련계획의 주요내용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대상계획이 각 상위·관련계획에 부합하는지를 검토·제시하여야 함(p.105~134)</p>	○상위계획과의 연관성을 제시하겠음.
2. 입지의 타당성	<p>(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p> <p>○사업시행으로 인한 불필요한 생태계 훼손은 지양하여야 하며, 특히 하천 개발 특성상 토사유출 등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p> <p>○생태계가 훼손되는 지역은 생태계교란생물(식물)의 침입에 취약한 곳으로 사업시행 전·후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제거 계획, 주변 보호지역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p.213~227)</p>	○세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본안에 충실히 반영하겠음.

구분	초안 의견	조치 계획
	<p>(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p> <p>○절·성토 등 토목 공사로 발생되는 나지 또는 사면에 대하여 토사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덮개설치,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p.242~263)</p>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겠음.
	<p>(수환경의 보전)</p> <p>○오십천은 동해바다로 최종 유입되는 수계로, 사업시행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므로 수질 및 수생태계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p> <p>○특히,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한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바, 공사시행전 여유율을 고려하여 충분한 용량의 침사지 및 다단 오탐방지막 설치 등 사업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p.334~338)</p>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침사지 및 오탐방지막 등의 설치여부를 검토할 것임.
	<p>(대기질)</p> <p>○계획부지 주변 정온시설(주거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어 사업 시행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비산먼지 등)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구체적인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p.420~422)</p> <p>- 야적물질 방진덮개 설치, 살수장치 설치·운영 등</p> <p>-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조치기준</p>	○대기오염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대책을 마련할 것임.
	<p>(소음·진동)</p> <p>○공사시 건설장비에 의한 소음진동 예측결과 정온시설 69개 중 28개 지점에서 목표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해당 정온시설의 피해예방을 위한 가설방음판넬 설치 등 구체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하여야 함(p.461~478)</p>	○공사시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가설방음판넬 설치를 검토할 것임.

3. 원주지방환경청 의견

구분	초안 의견	조치 계획
1. 총괄	○하천의 자연성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 필요한 구간에 한하여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생태환경이 양호한 구간은 원형보전 하는 등 하천이 본래 지니고 있는 자연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아래의 검토 내용을 반영하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세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본안에 충실히 반영하겠음.
2. 계획의 적정성	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동 사업계획과 상위계획,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및 부합여부, 과거 호우 및 수해로 인한 재해피해현황 등을 고려하여 하천의 자연성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상위계획과의 연관성을 제시하겠음.
	나.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 ○측제 및 보축, 호안계획 수립 시 비탈경사를 가급적 완경사로 조성하고, 자연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측제 및 보축, 호안계획 수립 시 비탈경사를 가급적 완경사로 조성하고, 자연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겠음.
	○동 사업은 환경적 여건을 고려하여 환경적 목표와 기준 유지를 전제로 진략과 방법, 위치와 시기, 공법 등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수립하여야 함.	○대안검토를 통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겠음.
3. 입지의 타당성	가.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본 계획의 내용을 구간별로 상세하게 제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현황 등)하고, 특히 생태환경이 양호한 구간은 원형보전 하는 등 하천이 본래 지니는 자연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하천 식생의 공간적 분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하천 생태계의 경우, 최대한 출현 식생을 원형 그대로 보전할 수 있는 계획 수립	○세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본안에 충실히 반영하겠음.

구분	초안 의견	조치 계획
	○기존의 하상기질(자갈, 호박돌 등)은 육수 동물(어류, 저서생물 등)에 매우 중요한 서식공간으로 공사시 하상기질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공사시 하상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음.
	○생태계교란 식물의 경우 주요 분포 구간, 규모 등을 제시하고, 주변 지역으로 유입·확산되지 않도록 증장기적인 제거·관리대책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생태계교란식물은 주기적인 제거를 통해 관리하겠음.
	나. 지형 및 생태측 보전 ○하천의 자연스러운 굴곡과 하상의 자연석 및 자갈 등은 최대한 자연상태를 유지하고, 기존의 직벽식(석축, 옹벽 등) 호안공에 대해서는 철거 등을 검토하여 하천의 자연성을 최대한 복원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하천의 자연스러운 굴곡과 하상의 자연석 및 자갈 등은 최대한 자연상태를 유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철거를 하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최대한 자연성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임.
	○호안은 치수적 측면, 생태계 보전 및 환경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호안공법을 비교·평가하여 제시하고, 선정호안공법에 대한 근거자료를 토대로 설치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세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본안에 충실히 반영하겠음.
- 호안 종류별 허용 소류력을 각각으로 제시하고, 대상구간 내 발생 가능한 최대 소류력과 비교하여 안정성 및 타당성 여부 검토		
○ 기존의 콘크리트 구조물(석축, 옹벽 등)로 조성된 구간에 대하여는 철거 등을 검토하여 하천의 자연성을 최대한 복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세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본안에 충실히 반영하겠음	
- 옹벽, 파라넷의 경우 적용 구간별로 설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적용시 구체적인 사유, 근거 자료를 함께 제시		

구분	초안 의견	조치 계획
	○재내지 토지이용현황 등에 따라 제방 및 호안계획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수부지, 쾌천부지 등을 홍수터로 확보하는 등의 비구조적 대책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세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본안에 충실히 반영하겠음
	○해당 하천의 자연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천의 시설물 설치 및 규모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함. - 둑머루 폭의 경우 계획홍수량에 따른 최소 설계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재내지의 추가적인 훼손 등을 최소화하는 방안 검토·제시하고, 비점오염저감 및 하천경관 향상 등을 위해 불부수질 포장을 지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제시	○세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본안에 충실히 반영하겠음
	- 호안의 비탈민중, 밑다짐폭 등은 최소 설계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비탈경사는 최대한 완경사로 조성하는 방안 검토·제시	○세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본안에 충실히 반영하겠음
	- 교량의 경우 여유고 및 경간장의 과부족 정도, 향후 도로확장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을 수립하되, 수생태계 교란 방지, 하천의 통수단면 확보 등을 위하여 가급적 하상에 교각 설치 지양	○세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본안에 충실히 반영하겠음
	- 보·낙차공의 경우 개별 시설물에 대한 준지 필요성 등을 검토·제시하되, 여울과 소의 반복을 통해 낙차를 해소하는 방법 등을 병행 검토하여 기능 저하 또는 상실된 구조물에 대하여는 철거하는 방안 검토·제시	○세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본안에 충실히 반영하겠음
	- 어도의 경우 해당 하천의 환경특성(유량, 수위, 유속 등), 생태적 현황(서식 어종 등) 등을 고려하여, 하천 상·하류간 어류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형 하도식 어도 등 적용 검토	○세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본안에 충실히 반영하겠음

구분	초안 의견	조치 계획
	다.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축제 및 호안, 교량, 낙차공 등 각종 구조물은 하천경관 및 주변 식생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으로 계획·시행하되, 시설물은 주변 경관유형별 분석 및 영향예측을 통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형태, 색채 등을 선정하여 경관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세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본안에 충실히 반영하겠음.
	라. 수환경의 보전 ○계획하천에 대한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목표수질 달성 및 유지를 위한 오염원 관리, 수질개선 대책 등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하천의 유량 및 수질조사 결과, 오염원(점오염원, 비점오염원) 현황, 오염부하량 산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질개선 대책 검토·제시 - 하천구역 내 불법경작 현황을 조사·제시하고, 비점오염원으로서의 제거·차단을 위한 중·장기적 관리방안 검토·제시 등	○세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본안에 충실히 반영하겠음.
	○제방 계획의 경우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계획하폭, 하도 특성 등을 반영하여 필요성을 검토하되, 재내지의 토지이용현황 및 인접 시설물 여부, 기성제 현황, 하천 경관 등을 고려한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세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본안에 충실히 반영하겠음.
	- 제방 및 호안계획 구간의 경우 지구별로 계획경면도, 위성사진, 생태·자연도 현황 등을 검토·제시하고, 지구별로 위험지구 지정 여부, 홍수피해 이력, 예상되는 치수적 문제점 등이 있을 경우 근거 자료를 함께 제시	○세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본안에 충실히 반영하겠음.
	- 제방 및 호안계획 구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계획하천 축결별로 계획홍수위, 계획제방고, 기설제방고, 과어유고 등을 검토	○세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본안에 충실히 반영하겠음.

구분	초안 의견	조치 계획
	- 산지부의 양호한 식생과 인접한 지역, 하천 내 자연스럽게 형성된 주요 지형 등에 대하여는 시설물 설치(제방 및 호안 등) 계획을 배제하는 방안 검토	○세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본안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마. 환경기준 부합성	
	○대기질, 토양, 소음·진동 등 항목별로 관련 법령 및 현황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공사 및 운영 시의 환경보전 목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저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보전목표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저감방안을 수립할 것임.
	○소음·진동 예측결과 기준을 초과하는 지점에 대해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제시하되, 저감시설 설치 후에도 소음·진동 예측결과가 기준을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 저감방안을 검토·제시하여야 함.	○소음·진동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할 것임.
	바.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사업시행으로 인한 각종 폐기물(건설·임목·생활폐기물, 폐유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하는 폐기물은 최대한 재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유형별 적정 관리계획을 수립·제시하여야 함.	○폐기물 유형별로 적정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임.
	사.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대상하천의 생물다양성 현황, 생태적 환경, 수질 및 수리적 특성, 현재 하천공간의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구역별 공간구상(보전·복원·천수지구)을 구체적으로 설정·제시하여야 함.	○하천구역별 공간구상내용을 제시하며, 세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본안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구분	초안 의견	조치 계획
3. 기타 사항	<p>□ 본 사업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금회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세부평가항목을 검토하여 향후 관련 결사를 생략하고자 계획하나, 본안 작성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세부평가항목을 면밀히 검토·제시하여야 함.</p> <p>□ 평가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본 검토의견 포함) 및 이에 대한 반영여부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관련 내용의 반영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 설명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p> <p>□ 평가서에 제시하는 모든 자료(도면, 조사표 등)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해상도, 규격으로 제시하여야 함.</p> <p>□「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17.11.27.)」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등 대행계약서 제출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함.</p> <p>○계약상대자 변경(환경영향평가업 양도)에 따른 변경계약서 사본 제출</p> <p>□「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작성한 행정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소속, 직책, 성명을 제시하여야 함. 끝.</p>	<p>○금회 전략영향평가만을 진행하는 사업임.</p> <p>○세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본안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p> <p>○세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본안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p> <p>○세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본안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p> <p>○세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본안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p> <p>○세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본안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p>

삼척시 공고 제2019-492호

2020 삼척 도시관리계획(재정비)(안) 재열람 공고

- 1. 삼척시 공고 제2017-453호(2017. 6. 9.)로 열람 공고한 '2020 삼척 도시관리 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의 내용이 이후 진행된 관계 행정기관 협의,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치면서 일부 변경되어
- 2. 대법원 판례[2012두11164, 2015. 1.29.]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한 재열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삼척시장

가. 주요 변경내용: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

나. 열람기간 및 장소: 2019. 5.31. ~ 2019. 6.14.(15일간), 삼척시청 도시과

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조서 및 도면: 삼척시청 도시과 비치

라.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열람기간 내에 삼척시장(도시과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공고 관련 기타 사항은 삼척시청 도시과(☎ 033-570-38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공고 제2019-496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사망 포함)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공고장소 : 삼척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 2. 공고기간 : 2019.05.28 ~ 2019.06.11. (15일간)
- 3. 말소(예정)일자 : 2019.06.12.
- 4.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김석○
	주소 (대장상주소)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한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지번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흥전리 38 목조 (1층:28.39㎡) 단독주택)	
마.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 사항

-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부서(☎033-570-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05. 28.

삼척시장

삼척시 공고 제2019-501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1. 공고장소 : 삼척시청 계서관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계서관 및 홈페이지
- 2. 공고기간 : 2019.05.29. ~ 2019.06.12. (15일간)
- 3. 말소(예정)일자 : 2019.06.13.
- 4.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최장○
	주 소 (대장상주소)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한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지번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부남리 244	
	목조 (1층:61.04㎡ 주택)	
마.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 사항

-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부서(☎033-570-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05. 29.

삼 척 시 장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당사자	성 명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근덕면 공고 제2019-18호

도로의 지정·공고

삼척시 근덕면 하맹방리 334번지 상에 제2종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신고 신청에 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하고자 합니다.

2019년 5월 31일

삼척시장

- 도로의 위치 : 삼척시 근덕면 하맹방리 334번지
- 도로의 현황 : 길이 : 35.7m, 너비 : 2.3m, 면적 : 8.0㎡
- 지번별 도로부지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공부상 면적	체외 면적	지정 면적	
근덕면 하맹방리	334	대	450	442	8.0	이**